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0.10.21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.10. 7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0.10. 8.
- 다. 상정일자 :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0.10.21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강 선 속 가정복지과장

### 가. 제안이유

근거 법령인 「청소년기본법」의 개정(2004.02.09, 법률 제7162호)으로 관련 조항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존치되고 있어 법과 조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,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명을 근거 법령에 맞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함.

- 2) 관련 법조항을 “청소년기본법 제13조”에서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”로, 위원회 명칭을 현행 “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청소년위원회”에서 “서울특별시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”로 변경함(안 제1조)
- 3)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,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, 위원 해촉사유에 성범죄 등 범죄 내용을 추가함(안 제4조)
- 4) 구청장 보고에서 회의록 작성·비치 의무로 변경하고, 회의록 작성과 관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8조)
- 5)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 변경(안 제2, 3, 4, 5, 6, 9, 10, 11조)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기본법」이 개정(2004.2.9 법률 제7162호)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,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관련 규정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0 본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, 안 제2조제1항제6호 중 “그 밖의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안 제3조제3항제1호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(이하 “구의원 “이라 한다)”을 “삭제”하며, 안 제4조제1항 중 “위촉 당시에”를 삭제하고,  
 조례 제4조제1항 중 “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”는 안 제3조제3항제1호의 “구의회 의원”을 삭제할 경우 위 조문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  
 안 제7조 본문 “제7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.”는 입법체계상

“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.” 로 하고, 안 제9조 본문 “제9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” 는 “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” 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0.10.21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” 구의원 “이라 한다)” 을 삭제함. (안 제3조제3항제1호)
- 나. “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” 를 삭제함. (제4조제1항)
- 다. “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.” 로 함. (안 제7조)
- 라. “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” 로 함. (안 제9조)

#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제6호 중 “그 밖의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안 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 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” 를 삭제한다.

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.

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조례 제10조제2항 중 “아닌자” 를 “아닌 사람” 으로 한다.

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2. 청소년단체, 시민단체, 교사단체 및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</p> <p>3. 학부모, 교육자,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회 의원인 <u>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</u>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,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, <u>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</u>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</p> <p>②위원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.</p> <p>제9조(출석발언)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·발언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수당등) ① (생략)</p> <p>②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-----2년-----          ---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회 <u>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-----</u>  <u>해당 -----</u>.</p> <p>②-----, 금품·향응수수, 성범죄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와 질병 등의 ----- 없을 때에는 -----          -----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-----.</p> <p>제7조(간사) 제7조(간사)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.</p> <p>②&lt;삭제&gt;</p> <p>제9조(의견청취) 제9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제10조(수당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2. -----          ----- 사람</p> <p>3. -----          ----- 사람</p> <p>제4조(위원의 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<u>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9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제10조(수당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         -----아닌 사람-----</p>